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24. 김남희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6. 7. 27.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27.)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8.)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6. 7. 29.)

상정·대체토론·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7. 29.)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김남희의원)

제안이유

2026년 10월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게 됨.

이러한 제도 전환에 맞추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과 사건송치,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중대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새로운 권한과 책임 구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추가함
(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긴급사 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 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의2 신설).

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196조 삭제)

라.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마.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피해자등”)은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아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245조의6).

바. 검사의 사건 처리 통지 대상을 종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서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고,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7.27.)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